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6
----------	-----

2014년 12월 18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11월 17일, 김희걸 의원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4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김희걸)

-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조항별 신·구 대비표〉

조항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 제2항 중	부여할 수	줄 수	
제8조 중	취할 수	밟을 수	
제8조 제4호 중	현저한	뚜렷한	
제11조 제3호 중	취·창업	취업·창업	
제15조 중	취할 수	밟을 수	
제15조 제3호 중	현저한	크게	
제19조제4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
제21조 제2항 중	적합하도록	맞도록	
제22조 제1항 중	경감할	줄일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경감	줄임	
제22조 제1항 제2호 중	경감	줄임	
제22조 제1항 제2호 중	경감한다	줄인다	
제22조 제2항 중	경감할	줄일	
제22조 제2항 제1호 중	경감한다	줄인다	
제22조 제2항 제2호 중	경감한다	줄인다	
제22조 제2항 제3호 중	경감한다	줄인다	
제29조제2항 중	교부결정	발급결정	
제29조제2항 중	취할 수	밟을 수	

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우선, 안 제19조제4항의 내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시행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바, 동 개정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음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됨.

- 다만, 현행 조례 내용 중 “취할 수” 를 “뺄 수” 로 개정(안 제8조와 안 제15조, 안 제29조제2항 관련)하려는 것과, “현저한” 을 “크게” 로 개정(안 제15조 제3호)하려는 것은,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현행의 용어를 유지하더라도 그 해석상 어려움이 크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행 조례의 입법 의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 이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사업’ 의 정비 기본원칙에서도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기본원칙에 따르면, “알기 쉽고 친숙하며 일반화된 현대적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에 있어 입법 의도와 다르게 이해 될 소지가 있는 법률 용어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한 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상기 제시한 용어들은 법제처 기준 정비 용어 및 국립국어원 권장 순화어를 고려해볼 때 현행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조사됨.
- 덧붙여, 안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경감” 또는 “경감한다” 등 관련 용어를 “줄임” 또는 “줄인다” 등으로 일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개정 본문안에는 현행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경감한다” 의 경우 여기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이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개정안의 본문 내용 작성에서의 단순 실수로 파악되어짐. 따라서 만약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상기의 개정안 본문 내용에서 탈락된 용어는 의안의 정리를 통하여 교정·보완 될 필요가 있음. 마찬가지로 안 제15조의 개정본문 중 “크게” 는 “뚜렷한” 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 또한 의안 정리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부여할 수”를 “줄 수”로 한다.

제8조 중 “취할 수”를 “밟을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현저한”을 “뚜렷한”으로 한다.

제11조제3호중 “취·창업”을 “취업·창업”으로 한다.

제15조중 “취할 수”를 “밟을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현저한”을 “뚜렷한”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적합하도록”을 “맞도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경감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중 “경감”을 “줄임”으로 하고, “경감한다”를 “줄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중 “경감”을 “줄임”으로 하고 “경감한다”를 “줄인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경감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중 “경감한다”를 “줄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중 “경감한다”를 “줄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중 “경감한다”를 “줄인다”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교부결정”을 “발급결정”으로 하고 “취할 수”를 “뺄 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생략)

3. 여성발전센터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9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③ (생략)

④ 설립비 또는 운영경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해당 여성관련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숙박(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 낮을 수 ----.

1.~2. (생략)

3. ----- 뚜렷한

제19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1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맞도

-----.

제22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

----- 줄일 -----.

1. -----

----- 줄임 -----

----- 줄인다.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숙박(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사용료 각각 면제. 다만,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3. 그 밖에 교육과정의 이용률, 교육운영시간,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교육과정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제29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

2. -----

----- 줄임 -----

----- 줄인다.

② -----

----- 줄임 -----.

1. -----

----- 줄인다.

2. -----
----- 줄인다.

3. -----

----- 줄인다.

제29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
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지급결정 --
----- باط을 수 --.